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4. 7. 2)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4. 7. 5)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4. 7.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 태 규

가. 제안이유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3회계연도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63만7천원이 포함된 2,156억3,267만4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274억81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27억3,371만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93.7%로 전년도의 93.1%보다는0.6% 상향되었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1,105억8,972만1천원에 비해 실제수납액은 952억5,682만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6.1%로 전년도의 87.9%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2,147만9천원 대비 약19.9%에 해당하는 4억4,247만1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10억1,864만6천원 대비 약9.9%에 해당하는 10억9,816만6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12.2%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체납금에 대한징수 대책이 요구됨.

○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2,851만4천원이 포함된 370억4,021만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536억9,885만2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67.5%에 해당하는 362억4,988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83억1,678만8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주차위반과태료인 미수납액은 174억4,896만8천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144억5,517만1천원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됨.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0억4,021만9천원 중 약 22.4%에 해당하는 83억1,678만8천원은 지출되고, 주로 주차장건설 적립금인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6천원이 되겠음.

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노력이 계속 요구됨.

○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3,267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0%에 해당하는 1,718억4,097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당초 건물 임차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망원2동 임시청사 가건물 신축을 포함하여 5건에 1억 6,690만6천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였으며, 홍대문화지구 학술용역비외 14건의 명시이월비 46억7,941만2천원과 전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외 27건의 사고이월비 202억3,818만9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8% (전년도 11.3%, 불용액 198억1,151만5천)에 해당하는 188억7,410만1천원이 되겠음.

○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7,410만1천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2억2,1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8,645만6천원, 예산집행잔액 123억1,672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2,742만6천원, 예비비 10억2,179만4천원이 되겠음.

<검토의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7,410만1천원 대비 약65.3%에 해당하는 123억1,672만4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미약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동행정운영에서 4개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30억원과 가정복지에 편성된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비 12억 1,242만6천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시 지역여건 및 실재가격 등의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드시 200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2,700만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비효율성과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감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감사의견서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1백7십 만원이 남은 이유는?

○ 답변요지(채진욱 감사담당관) : 낙찰차액이 대부분임.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검토 하겠음.

○ 질의요지(운동현 위원) : 문화체육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박도식 문화체육과장) : 2003년도 구민체육대회가 태풍 매미관계로 취소되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등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민원봉사과 같이 소모성 경비만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바람.

○ 답변요지(김시진 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운동현 위원) : 동청사, 어린이집 건립 부지등을 실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박태규 기획재정국장) : 예산편성시 지역여건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내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박태규 기획재정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경제개발비 미집행 잔액이 24억3천6백만원의 내역은?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서교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불가능하여 금년에 신수 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사회복지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전완수 위원) : 지역경제과는 타부서와 협조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공원녹지과 예산잔액이 타부서 보다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재만 공원녹지과장) : 시설비중 낙찰차액이 대부분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주택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약 10억원 미집행된 이유는?

○ 답변요지(류훈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 전체 집행잔액이고 대부분 낙찰차액이라고 사료됨.

○ 질의요지(전완수 위원) : 도시미관을 위하여 가로수 수종변경 하는데 어려운가?

○ 답변요지(김재만 공원녹지과장) : 연차적으로 변경을 하겠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하수관리 예산잔액이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이상환 치수과장) : 대부분 사업예산 총 14건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임.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토목과 사고 이월비가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작년 추경예산이 11월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음.

○ 질의요지(전완수 위원) : 공사 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요지(김영식 건설교통국장) : 최선을 다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사항 : 없 음